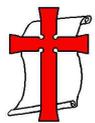


정관개정안

2024. 03.30 최종수정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인동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03번길 56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범위) 위의 목적을 수행하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기관과 항목을 두어 추진한다.

1. 총칙
2. 당회
3. 제직회
4. 공동의회
5. 교인
6. 교회학교
7. 찬양대
8. 선교단체
9. 특별위원회
10. 재정 및 재산
11. 직원
12. 예식
13. 구역
14. 권징
15. 교회지원단체
16. 부칙

제2장 당회

제5조(당회)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며, 은퇴장로는 언권회원이 된다. 당회는 매월 1회 4째주일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성수)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회집) 당회의 회집은

1.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8조(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괄하며, 세례·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3. 예배 주관 및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3. 교적부 작성 및 관리(세례, 입교, 유아세례)하고 접수한다.
4.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노회에 파송 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한다.
7. 범죄한 교인을 소환 신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는 권징한다.
8.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교역자와 직원(유급직원,관리인,사무원,운전기사,기타)을 인선하고 임무를 배정한다.

10. 집사, 구역강사, 구역장, 권찰, 성가대원, 교회학교 교사 등을 임명한다.

11. 부흥집회 및 기타 행사 시 강사초빙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단, 찬양예배, 헌신예배, 수요기도회 심야기도회 등은 당회장이 예배부장과 당회서기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당회 서기와 재정부장은 임직 순으로 임명한다.

제9조(임원) 당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회장 : 본 교회의 당회를 대표하며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 : 당회와 공동의회의 기록 및 모든 문서를 작성 관리하고 당회원 중 임직순으로 하되 사정이 있을 시 차차 순으로 한다. 단, 제3장 제35조의 부장이나 부서장은 겸할 수 없다.

제10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며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고려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12조(장로의 선택)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제13조(장로의 임직) 피선된 후 4개월 이상 당회 아래에서 교양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나 대전노회 성서신학원에서 실시하는 향존직 피택 예정자 교육을 3개월 이수한 자를 교회에서 임직한다.

제14조(장로의 시무사임, 사직, 은퇴)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할 때,

2. 권고사임 :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될 때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로

3. 자의사직 : 범법은 하지 않았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사직 할 수 있다.

4. 은퇴 : 향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15조(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하고 원로 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에 허락을 받아야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제16조(원로장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은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하면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장로를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은퇴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18조(장로 휴무) 장로가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장로의 복직)

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하려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의 경우는 그 권고 사임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로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3. 자의사직 장로의 복직은 당회 3분의 2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3장 제직회

제20조(구성) 제직회는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구성하며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제21조(항존직, 임시직)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까지이고,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연임 할 수 있다.

제22조(임원, 감사)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임직순으로 정한다.

1. 임원 : 3인(회장 : 담임목사, 서기 : 안수집사 또는 권사 1인, 회계 : 안수집사 또는 권사 1인)

2. 감사 : 3인(장로 1인, 안수집사 1인, 권사 1인) 위원장은 예결위원장(당회서기)인 장로가 된다.

제23조(개회 성수) 제직회는 3, 6, 9, 12월 첫째 주에 모이고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성수는 출석수로 한다.

제24조(소집) 제직회 소집은 당회가 결의하거나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하거나 교회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25조(직무와 결의) 결의는 과반수로 하고 인선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당회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선교비, 구역헌금, 장학헌금, 발전기금, 구제비 기타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집행
5. 부동산 매매
6. 기타 당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건

제26조(집사의 자격)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이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로 디모데 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제27조(안수집사의 직무)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28조(권사의 자격)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상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제29조(권사의 직무)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란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헌금 수납 및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30조(안수집사와 권사의 선택) 집사와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31조(안수집사와 권사의 임직) 교회에서 임직한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선출된 후 3

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

제32조(안수집사와 권사의 사임, 사직, 은퇴)

1. 자의사임은 안수집사나 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은 안수집사, 권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 할 줄 알면 자의사직 할 수 있다.
4. 은퇴 : 정년되기전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 은퇴를 희망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은퇴 할 수 있다.

제33조(은퇴 안수집사, 권사) 안수집사, 권사의 은퇴는 만 70세로 하고 본인이 원하면 65세 라도 할 수 있다.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연권회원이 된다.

제34조(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복직, 정년)

1. 안수집사나 권사가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자의사임한 안수 집사나 권사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사임의 경우는 그 권고 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4. 자의사직한 안수집사나 권사의 복직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35조(집사의 선택, 임기) 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25세 이상 된 자로 당회장의 재청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임명하되 그 교회에 등록된 후 2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 히 감당하는 자라야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타 교회에서 전입한 집사는 이명 접수 6개월 경과 후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사역위원회 및 임무) 제직회는 사역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당회의 결의로 사역위원회를 증가하거나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각부구성) 각 부의 구성은 제직(항존직과 안수집사)으로 하며 각부에는 사역위 원장(장로)을 두며 약간 명의 실행의원을 둔다.

제38조(선임) 각 부의 임원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공동의회

제39조(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40조(소집)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직회 청원이 있을 경우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0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은 한 주일 전에 광고한다.

제41조(개회)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결의)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항존직 등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43조(결의 및 투표) 공동의회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의 과반수 결의로 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44조(의장과 서기)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의 의장과 서기로 한다.

제5장 교인

제45조(교인)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46조(교인의 신급) 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아동세례교인 : 만 7~12세이하 어린이로서 세례를 받은 자
4.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 교인으로 입교한자(13세이상), 원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13세이상된 자)

제47조(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48조(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

제49조(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명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50조(교인의 출타 신고)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2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2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52조(교인의 복권) 회원권이 정지되었던 교인이 돌아왔는 때는 6개월, 실종교인이 되었던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1년이 경과할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6장 교회학교

제53조(목적)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체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고 성장케 하여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갖추는데 있다.

제54조(조직) 교회학교 조직은 다음과 같고 필요에 따라서 당회의 결의로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회학교 교장은 당회장이 된다.

2. 각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교무 및 교사는 각 부서 부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교회학교 각 부는 다음과 같다.

1) 유치부

① 영아부(~ 3세까지) ② 유치부(4~6세이하)

2) 아동부

① 유년부(초등학교 1~3학년) ② 초등부(초등학교 4~6학년)

3) 청소년부

① 중등부(중학생 및 동등 연령) ② 고등부(고등학생 및 동등 연령)

4) 청년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에 상응한 나이의 청년으로 구성

5) 장년부

6) 노년부(하사모)

제55조(교사임명) 교회학교 교사(보조교사 포함)는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자격

1) 세례 받은 후 3년이 경과 된 자

2) 타 교회에서 온 성도는 본 교회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임명 : 교육사역위원장의 추천과 당회의 재청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56조(교회학교 협의회) 교회 교육의 발전과 교회학교 각 부의 협력을 위하여 교회학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원은 교육담당 교역자, 각부 부장, 교회학교 각부 교무로 하며, 교육사역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협의회는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과 반성, 중장기 계획 협의나 결의를 한다.

제57조(대외활동) 각 부서의 대외 활동은 반드시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찬양대

제58조(목적) 찬양대는 예배와 교회 행사에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구성과 임무) 본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찬양대, 약간의 중창단과 관악부와 현악부를 둘 수 있다. 외부 초청, 방문예배를 위한 찬양은 각 찬양대에서 협의하여 순서를 정해 봉사한다.

제60조(임명) 찬양대 임명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및 대원의 임명은 음악사역위원장의 재청으로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사역위원장의 재청으로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지휘자 및 반주자의 임명은 제60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1조(자격) 찬양대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찬양대원은 세례를 받은 자로 한다.
2.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자는 등록일이 3개월이 경과 된 자라야 한다.

제8장 선교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

제62조(목적) 선교단체는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회원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구성) 본 교회에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선교단체를 두고 조직은 당회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승인) 각 선교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관 및 단체의 조직
2. 회칙(정관) 및 주요활동
3. 기관 및 선교단체의 모든 임·역원(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역원:각 부서의 장)은 본 교회 등록 2년, 세례 받은 후 1년 이상이 된 교인이어야 한다.
4. 기관 및 선교단체의 모든 대외 활동
5. 각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5조(협의회) 각 남여 선교단체 회장으로서는 남선교회 협의회와 여전도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외사업 및 공동사업을 협의하고 협력한다.

제66조(순회예배) 대전노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순회예배는 당회의 결의로 허락하고 격년제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선교단체 관련 행사는 당회의 결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제9장 특별위원회

제67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① 예결위원회 ② 장학위원회 ③ 묘지관리위원회 ④ 장기발전기획위원회 ⑤ 문화선교사역위원회, ⑥ 감사위원회 등 필요에 의해서 당회의 결의로 추가 및 조정할 수 있다.

제68조(구성)

1.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총무를 두며, 위원은 필요수로 구성한다.
2. 각 위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당회원이 되고 총무와 회계 서기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3. 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단, 2년 이상 유지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4. 각 위원회는 당회에서 위임한 소관 임무를 연구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의 결의로 그 임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및 재산

제69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예산 및 결산)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당회는 다음 해의 교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수조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와 각 기관에 전달한다.
2. 예결위원은 11월 중에 당회장이 임명하고 1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와 협의 후 예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이전에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4. 예산을 집행하는 제직회 각 부서, 각 기관의 수지 결산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년 2회,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5. 감사는 감사의 내용을 당회, 12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추가경정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와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한다.

제72조(지출) 모든 예산의 지출은 결의서에 의해서 집행한다.

1. 각 부 예산의 청구는 각 부서 부장이 청구하고 수령한다.
2. 모든 지출은 회계, 재정부장의 결재 후 지출한다.

제73조(현금수입) 현금의 수입 철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하여 수납 처리한다.

2. 매주일 수납금 전액은 수납 즉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찬양예배나 특별예배, 저녁예배 시의 헌금은 익일 정오까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4조(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은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부장은 인장을 관리하고, 회계는 장부 정리를 하며, 헌금회계는 통장을 관리한다.
2. 교회 재무 관계 증빙 서류(헌금출납관계)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교회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대전노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할 수 있다.
4. 교회 부동산의 취득은 당회에서 결의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
5. 교회의 중요한 재산 처분은 당회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받아 처분한다.

제11장 직원

제75조(직원선택) 헌법조례 26조에 의한 직원을 선택한다.

1.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반드시 당회장(대리 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64조 2항(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2. 장로는 안수 집사와 안수권사에서 선출하되 장로는 2차 투표로 하되 1차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고 2차 투표는 1차 투표 후 당회가 교인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를 심의하여 2배수를 추천하여 투표한다. 단, 필요시 당회결의를 통해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다.

3.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유급직원) 본 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급직원을 둔다.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 운전기사, 사무원, 기타 유급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회원의 무기명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4.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1) 교역자

- | | | |
|-----------|-----------|---------------|
| (1) 담임목사 | (2) 부목사 | (3) 전문분야의 전도사 |
| (4) 심방전도사 | (5) 교육전도사 | |

2) 직원

직원은 필요에 따라 관리인, 운전기사, 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77조(임용)

1.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교회 정치 제5장 제28조에 의하여 청빙한다.

2. 전도사(전임, 심방)는 교회 정치 제7장 제49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재청으로 당회에서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3. 교육 전도사는 25세 이상이고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노회 전도사고시에 합격한 자(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로서 당회장의 재청으로 당회에서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4. 관리인, 운전기사, 사무원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단,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교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사임, 사직, 재임용) 담임목사와 당회원 사임은 교회정치 제5장 제35조에 의하며, 그 외의 모든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회장이 해임을 건의하고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사임케 할 수 있다.

제79조(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본교회 교인으로 등록 후 당회의 결의에 의해 교회의 직원(임시직)이 되거나 직분(구역장, 교사, 성가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을 맡을 수 있다.

2. 향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효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가산한다.
제80조(사례비) 본 교회 직원의 사례비는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승인된 일정한 액으로 한다.

제12장 예식

제81조(결혼식) 본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교인은 당회 결의에 의해 예식을 할 수 있다.

제82조(임직식, 위임식, 은퇴식) 임직식, 위임식, 은퇴식은 당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83조(장례식) 은퇴장로의 장례식은 유족이 원할 때 당회의 결의로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 교회장은 원로장로와 원로목사, 시무장로로 한하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본 교회 교인의 직계 가족의 장례는 영정화환과 조의금, 조기를 지원한다.

제84조(유아세례) 유아세례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제85조(병상세례) 병상세례는 본인이나 보호자인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세례를 줄 수 있다. 단 위급한 경우 세례 후 당회에 보고한다.

제86조(집회)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금요구역예배, 새벽기도회를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제13장 구역

제87조(구역편성) 구역은 다양한 모임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당회의 결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4장 권징

제88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9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 직원, 각 치리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이사와 감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개정 2019.12.19.]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개정 2019.12.19.]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개정 2012.11.16]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12.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의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직원 및 이사, 감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 산하기관 및 단체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제90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2014.12.8]

-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 ②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 ③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 ⑤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 ⑦ 상회총대파송정지 : 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 ⑧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개정 2019.12.19.]
- ⑨ 출교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개정 2019.12.19.]

제91조 [책벌의 원칙] [개정 2012.11.16]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제15장 교회지원 단체

제91조(교회지원 단체지원) 본 교회에서 지원하는 기관, 선교단체, 교회, 선교사의 지원은 해당부서에서 매년 심사하여 지원하되 당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단, 3년을 원칙으로 지원하되 당회의 결의로 연장지원 할 수 있다.

제16장 부칙

제1조(시행세칙) 본 교회 정관 시행을 위한 세칙, 각 부서의 회칙은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조 본 정관에 미비 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노회의 규칙에 준한다.

제4조(시행) 본 규정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현재, 시무하고 있는 목사, 장로는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현재 시무하고 있는 65세가 넘은 당회원의 시무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제 2조(위치) 법령등의 개정으로 교회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회에서 해당 정관을

공동의회 의결없이 변경할 수 있다.

2024년 3월 30일 개정안 최종수정 작성